## 《증보문헌비고》(형고)의 편찬과정과 그 체계

한 명 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책을 번역하는 사업과 함께 그것을 연구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김정일전집》제7권 275폐지)

민족고전인 《증보문헌비고》(형고)의 편찬과정과 그 체계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는것은 우리 나라 법률학의 발전력사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법률관계책인 《증보문헌비고》(형고)는 봉건통치배들이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위하여 봉건통치를 강화하는데 리용한 반인민적악법들을 묶어놓은 고전문헌으로서 고대로부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형벌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자료의 하나이며 그것은 당시의 사회계급관계연구에서 귀중한 참고로 된다.

《증보문헌비고》(형고)의 전신은 《동국문헌비고》(형고)이며 이 책은 1770년에 매우 복잡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편찬되였다.

봉건통치계급내부에서 벌어지고있던 당파싸움은 이 시기에 더욱 치렬하게 벌어지면서 그들사이의 알륵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였다. 또 18세기에 들어와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하는데 따라 봉건통치배들의 탐욕이 더욱 표면화되면서 탐오협잡행위도 날이 갈수록 우심해 졌고 봉건통치제도와 사회질서가 전반적으로 문란하여졌다.

봉건통치배들은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와 봉건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찾는 과정에 여러가지 《방책》이라는것들을 내놓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자료들을 묶거나 보충하여 책으로 편찬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1769년(영조 45년) 당시 널리 알려진 지리학자 신경준에게 《여지편람》을 감수하게 하였고 그해 12월 편집청을 설치하고 《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문헌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1 그 이듬해인 1770년(영조 46년) 8월 100권 40책으로 된 《동국문헌비고》를 출판하였다. \*2

- \*1 《영조실록》 권113, 45년 기축년 12월 임신일
- \*2《영조실록》권115, 46년 경인년 8월

《동국문헌비고》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 봉건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편람 형식의 참고서로서 그 량이 대단히 방대한데 맞게 각 분야의 지식들을 포괄하고있다. 여기 에는 총 13개의 고들이 들어있으며 《형고》는 그중의 하나이다.\*

\*《증보문헌비고》의〈예문고〉권243, 력대 저술

《동국문헌비고》(형고)는 체계의 통일성이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오유와 탈자, 오자들도 많은 결합들이 있었다.

이로부터 10년후인 1782년(정조 6년) 2월 당시 왕이였던 정조는 책의 수정보충을 위해 편집청을 따로 두지 않고 이 일을 당시 해박하기로 소문난 리만운에게 맡기였다. 그는 이사업을 거의 9년동안 단독으로 진행하여 1790년(정조 14년) 여름에 완성하였다.\*

\*《증보문헌비고》정조어제증정문헌비고표기

리만운은 《동국문헌비고》를 교열하면서 우선 원래의 내용들을 상당히 수정보충하였고 또 1770년이후부터 1790년사이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록하였다. 그 후 1807년 여름 규장각의 관리 심상규의 제의에 의하여 순조왕은 이 책의 수정, 보충사업 을 리만운의 아들인 리유준에게 맡기였다.

리유준은 2명의 동료들과 함께 원래 예정되였던 방향에 따라 2년 반이 지난 1809년(순조 9년) 겨울에 수정, 보충하고 교정사업을 끝냈다.\*

\*《증보문헌비고》부록《수개본말》

《동국문헌비고》(형고)는 정조왕대부터 순조왕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30여년동안 리만 운부자에 의하여 여러번에 걸쳐 수정, 보충, 교열되여 완성되였지만 분량이 매우 많았던 관 계로 인차 출판되지 못하고 사본으로 그냥 남아있었다.

《동국문헌비고》는 약 100년후인 고종왕대에 와서 다시 수정, 보충하게 되였다. 그것은 1894년 갑오개혁과 1897년에 국호, 왕호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새로 국내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사실들을 총화반영하여 력대적으로 내려오던 문헌들을 크게 정비하여야 한다는 봉건정부의 의도로부터 시작된것이였다.

이 사업은 1903년(광무 7년)에 찬집소를 설치하고 박용대, 조정구, 남정철 등 33명의 관리들로 시작되여 1906년(광무 10년) 12월에 편찬이 거의 완성되였고 1907년 2월에는 교정, 검열이 끝나 책이름도 《증보문헌비고》(총 16개의 고에 250권인데 《형고》는 이 16개의고중의 하나임.)로 고쳐졌다.\*

\* 《고종실록》권47, 43년 병오년 광무 10년 12월 12일 《고종실록》권48, 44년 정미년 광무 11년 2월 11일

《증보문헌비고》(형고)는 전신인 《동국문헌비고》(형고), 리만운부자의 보충본 그리고 그이후의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또 그 이전시기의 기사들에 대해서도 얼마간 더 넣거나 빼버리였다.

《증보문헌비고》(형고)는 우리 나라 봉건국가의 첫 편람형식의 참고서로서 특히 형벌제정과 형벌의 종류, 형벌적용대상, 형벌적용방법 등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수 있게 형식과 면모를 비교적 원만하게 갖추고있었다. 다시말하여 《증보문헌비고》(형고)는 고대로부터 세나라시기, 고려,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의 우리 나라 형벌관계자료와 관련한 국내외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로 하면서도 순수 법전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 형벌도구와 형벌적용에 관한 기록들을 구성에 포함시켜 형벌에 대한 종합적인 참고서로서의 성격을 잘 살리고있다.

《증보문헌비고》(형고)의 서문에서는 그 편찬동기와 포괄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것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형벌은 없어서는 안되며 특히 형벌을 적용하는데서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문란해질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의 력사책들에서 살펴보면 밝힐수 있다는것, 고조선시기에 벌써 나라를 다스리면서 형벌을 적용하였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형벌적용에 관한 지시들이 사라져 찾아보기 어렵게 되였다는것, 세나라시기를 거쳐 고려때까지 수많은 형벌적용에 관한 세칙들이 나왔지만 고정불변한것이 없어 그것을 고증할만 한것이 없었다는것이였다. 또한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야 형벌적용에 관한 법전들이 만들어지고 그 제도가 계승되면서 세밀하게 갖추어지게 되였고 영조때에 이르러서는 《어진 정치》를 펴면서 극형들인 무릎을 짓누르거나 살을 지지는 형벌, 온 가족을 변방에 류배보내거나 얼굴에 먹물로 글자를 새겨넣는 형벌 등을 폐지한

다음 《형고》를 7권으로 만들었고 그후 더 수정보충하여 14권으로 만들었다고 한것이다.\*

\* 《증보문헌비고》 권127, 형고 1 서문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표현형식으로서 지배계급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이다.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의 형벌은 극소수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근로인민대 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봉건지배계급의 무기였다.

그리하여 봉건지배계급은 나라를 잘 다스리자면 형벌을 옳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증보문헌비고》(형고)는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적용된 형벌은 시대마다 지방마다 달랐고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마다 달랐으므로 력대의 형벌제도와 그 변천과정, 형벌의 종류와 적용방법, 적용대상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만들었고 또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이후리만운부자가 수정, 보충한 내용, 그 이후 1903년부터 1904년까지 수정, 보충된 내용과 새로 설정하여 넣은 형벌과 관련한 법전들과 륙군법률을 더 포함시켜 만든것으로 하여 형벌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참고서로서의 편찬체계를 갖추고있다.

《증보문헌비고》(형고)는 고대로부터 세나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적용된 각종 형 벌들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수 있게 체계를 갖추었다.

《증보문헌비고》(형고)는 127권부터 140권까지로서 모두 14권으로 구성되여있다.

여기에는 고조선으로부터 세나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의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형벌을 적용한 자료들이 《형벌제도》, 《탐오행위에 대한 법조문》, 《도적을 다스리는 제도》,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 《형벌을 자세히 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 《형벌을 심중히 적용하는 제도》, 《형법에 관한 조문》, 《여러가지 법률들에서 같은 종류에 대한 기록》, 《륙군법률》 등의 항목으로 나뉘여 서술되여있다.

《형벌제도》항목에서는 고조선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8개의 형벌중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자는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자는 곡식으로써 그 값을 갚게 하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자는 물건을 몰수하고 그 집의 노비로 삼도록 한다는 3개의 조항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세나라시기에 실시한 반인민적인 형사법과 형벌, 재판절차, 노비제도에 관한 규정들과 그 형벌적용과정에 대하여 신라, 고구려, 백제의 순서로 또 년대순으로 내려가면서 간단히 언급한 다음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제정한 형벌들과 형벌의 종류, 형벌의 적용과정에 대하여 년대순으로 내려가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안받침하여 서술하였다.

《탐오행위에 대한 법조문》항목에서는 세나라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관리들이 비법적으로 재물을 받거나 도적질하는 현상과 그에 대한 형벌적용과정에 대하여 기본법전인《경국대전》,《속대전》등의 자료를 인용한 다음 년대순으로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도적을 다스리는 제도》항목에서는 신라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란동》으로, 그들을 이른바 도적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형벌을 적용한데 대하여 년대순으로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다음 1892년(고종 29년)에 정한 《도적을 처단하는 규례》와 1899년(광무 3년)에 개정한 《도적을 처단하는 규례》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다.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항목에서는 다시《사치를 금지하는 제도》,《술을 금지하는 제도》,《여러가지 금지하는 제도》 등의 세부편목들을 설정하고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봉건통치배들의 지나친 사치와 술로 인한 폐단에 대하여, 봉건관리들의 제의서, 사치와 술을 금지할데 대한 법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다음 지나친 사치를 부린자와 취하도록 술을 마신자 그리고 술을 만드는자들에 대하여 형벌을 적용한 내용과 백제, 신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관리들이 집을 지나치게 크고사치하게 짓거나 금과 은, 비단으로 옷이나 그릇을 사치하게 만드는것, 부림소를 도살하는 것, 시장에서 롱간을 부려 폭리를 얻는것, 수도와 지방의 토호들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강짜로 빼앗아 노비로 삼는것, 금지된 산에서 나무를 마구 베는것, 부녀자들이 녀자중으로 되는것, 연회를 지나치게 크게 차리는것, 몰래 무역하거나 장사하는것, 금, 은, 동을개인들이 캐내는것, 지방들에서 뢰물을 주고받는 현상과 그러한자들에게 형벌을 적용한데 대하여 년대순으로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형벌을 자세히 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항목에서는 백제, 신라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범죄사건의 처리절차와 죄수들에 대한 심문, 그 판결 등에 대하여 년대순으로 내려가면서 서술하였다.

《형벌을 심중히 적용하는 제도》항목에서는 백제와 신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죄인들에 대한 심문과 처리를 바로하지 못한 사실과 이른바 죄수들에게 대사령을 실시한 자료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형벌에 관한 조문》항목에서는 세나라시기를 거쳐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말기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우리 나라의 법 및 형벌과 관련한 법전들인《리방부격》(654년),《경국원전》(1394년),《경국속전》(1394년),《경제륙전》(1430년),《경국대전》(1471년),《전속록》(1492년),《후속록》(1543년),《사송류취》(1585년),《청송지남》(1585년),《수교집록》(1698년),《전록통고》(1706년),《속대전》(1744년),《흠휼전칙》(1778년),《대전통편》(1785년),《추관지》(1783년),《전률통편》(1787년),《법규류편》(1886년),《속법규류편》(1898년),《륙군법률》(1900년) 등 19개와 다른 나라에서 편찬된 형벌에 관한 법전들인《대명률》(1397년),《부례대명률》(1585년),《지정조격》(?),《무원록》(1438년),《증보무원록》(1796년) 등 5개에 대하여 저자와 편찬과정, 편찬년대에 대하여 밝히고 5가지 형벌에 대한 도해와 형벌도구들의 규격, 군영에서 쓰는 곤장의 크기와 재질, 적용대상, 속죄금을 거두는 방식, 범죄처형에 대한 환산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여러가지 법률들에서 같은 종류에 대한 기록》항목에서는 몽둥이로 볼기를 치는 형벌인 태형,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장형, 장형을 치고 고된 일을 시키는것, 장형을 치고 류형에 처하는것, 장형을 치고 이주시키는것, 장형을 치고 군사로 보내는것, 장형을 치고 먼 변경에 군사로 보내는것, 장형을 치고 수군에 군사로 보내는것, 도형을 집행한 뒤에 귀양을보내는것, 장형을 치고 장소를 정하고 귀양을 보내는것, 일정한 해수의 기한이 없이 귀양을 보내는것, 장형을 치고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는것, 먼 변경에 귀양을 보내는것, 가장 먼 변경에 귀양을 보내는것, 장형을 치고 외진 섬에 귀양을 보내는것, 사형에서 감하여 장소를 지정하여 귀양을 보내는것, 노비로 만드는것, 사형, 목을 베여 매다는것, 때를 기다려 교수형에 처하는것, 때를 기다리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것, 때를 기다려 참형에 처

하는것,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하는것, 반역죄를 진 중죄수 등에 대하여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 몸뚱이를 찢어서 각지에 조리를 돌리던 최대의 극형, 탐오죄를 지우는것, 법을 어기지 않고 례물을 받거나 뗴먹은 물건, 절도범이 훔친 물건, 법을 어기면서 탐오했거나 뢰물을 받은 물건, 일반백성이 창고의 돈과 량곡을 도적질하는것, 감독하고 보관할 책임을 진 사람자신이 도적질하는것, 부정적인 수단으로 얻은 재물을 계산하는것 등에 대한 형벌과 그 적용대상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언급한 다음 부록으로 폐지된 법률인 몽둥이로 볼기를 치는 형벌인 태형,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인 장형, 죄를 범한자에게 매를 치고 고된 일을 시키는 형벌,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형벌, 일정한 해수의 기한이없이 귀양을 보내는것, 외진 섬에 귀양을 보내는것, 사형에서 감하여 장소를 지정하여 귀양을 보내는것, 노비로 만드는것, 군사로 보내는것, 먼 변경에 귀양을 보내는것, 사형, 목을 베여 매다는것, 목을 베는것 등에 대한 내용을 붙이였다.

《륙군법률》항목에서는《패거리를 무어가지고 란동을 부린것에 대한 법조문》,《명령을 어긴것에 대한 법조문》,《권한외에 제멋대로 행동하는것에 대한 법조문》,《직무를 욕되게 한것에 대한 법조문》,《지한을 어긴 죄에 대한 법조문》,《군사기밀과 관련하여 잘못을 저지른 죄에 대한 법조문》,《폭행한 죄에 대한 법조문》,《죽이거나 상하게 한 죄에 대한 법조문》,《방법을 강구하여 약삭바르게 회피하려는 죄에 대한 법조문》,《도망한 죄에 대한 법조문》,《허위죄에 대한 법조문》 등의 세부편목으로나는 다음 우의 군법들을 위반한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처럼 《증보문헌비고》(형고)에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설정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형 벌제정과 형벌의 종류, 형벌의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형벌도구들의 종류와 규격, 적용대상 등 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여있다.

《증보문헌비고》(형고)는 당시 우리 나라 형벌의 제정과 형벌의 종류와 형벌적용, 그 변 천과정을 종합하고 거기에 국내외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서술한 책인것으로 하여 그 편 찬체계에서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편찬체계에서 지난 시기의 문헌들(《고려사》의 《형법지》,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처럼 《형법지》나 《형전》이라는 항목아래 세부조항을 세우고 형벌에 관한 자료들을 넣은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항목을 설정하고 내용을 전개한것이다.

《고려사》의《형법지》에서는《형벌의 명칭과 집행규례》,《국가규정》,《친척간에는 같은 부서에서 벼슬하기를 피하는것》,《관리의 휴가》,《말을 탔을 때 길을 피하는 규정》,《공문 서왕복양식》,《관리들에 대한 처벌규정》,《간통죄》,《호적법과 혼인법을 위반한 죄》,《친척 을 살상한 죄》,《사람을 죽였거나 부상시킨 죄》,《금지하는 법령》,《도적을 잡을데 대한 조 항》,《군법》,《죄인을 생각해주는것》,《소송》,《노비》등 17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내용을 서 술하였다. 현재 전해지는《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항목들중에서《관리들에 대한 처벌규정》 이하의 항목들이《형전》에 해당된다.

《고려사》의《형법지》에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형사법과 형벌,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수록되여있다.

이 규정들은 주로 《관리들에 대한 처벌규정》, 《간통죄》, 《호적법과 혼인법을 위반한 죄》, 《친척을 살상한 죄》, 《사람을 죽였거나 부상시킨 죄》, 《금지하는 법령》, 《도적을 잡을데 대 한 조항》,《군법》등의 항목들에 규제되여있다.

《고려사》의 《형법지》에는 소송과 노비에 대한 규정도 수록되여있는데 노비제도에 관한 규정은 《소송》, 《노비》 등의 항목에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경국대전》 5권의 《형전》은 《형률의 적용》, 《범죄사건처결의 기한》, 《죄인의 구금》, 《죄인에 대한 심문과 처결》, 《형벌집행을 금지하는 날》, 《형벌의 람용》, 《위조》, 《죄수에 대한 규휼》, 《도망》, 《재인과 백정들의 집결》, 《도적에 대한 체포》, 《탐오죄와 도적죄》, 《간악한 시골아전》, 《은전의 대용》, 《범죄의 처형에 대한 환산》, 《웃어른에 대한 고발》, 《단속하는 사항》, 《억울한 사정에 대한 신소》, 《송사에 대한 정지》, 《천인출신의 첩》, 《천인출신의 안해와 첩에게서 난 아들딸》, 《공노비》, 《개인노비》, 《천인이 녀종에게 장가들어 난 자식》, 《대궐안의 각종 차비》, 《따라다니는 하인》, 《각 관청에 배정하는 차비 맡은 남종과 따라다니는 남종의 인원수》, 《지방관청의 노비》, 《노비송사를 처결하는데서 제정된 기한》 등 29개의 항목으로 되여있다.

《경국대전》의《형전》에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형사법과 형벌,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수록되여있다.

이 규정들은 주로 《죄인에 대한 심문과 처결》, 《위조》, 《도망》, 《도적에 대한 체포》, 《탐 오죄와 도적죄》, 《웃어른에 대한 고발》 등의 항목에 규제되여있다.

《경국대전》의 《형전》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노비제도에 대한 규정도 수록되여있다. 노비제도에 관한 규정은 《천인출신의 첩》, 《천인출신의 안해와 첩에게서 난 아들딸》, 《공 노비》, 《개인노비》, 《천인이 녀종에게 장가들어 난 자식》 그리고 부록으로 붙어있는 《노비 송사를 처결하는데서 제정된 기한》이라는 항목에 규제되여있다.

이러한 편찬체계는 그 이후에 나온 우리 나라의 기본법전을 서술한 《속대전》,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려사》의 《형법지》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형전》의 이러한 편찬체계는 당시의 형벌관계자료들이 우와 같은 항목들에 각각 수록되여있어 각 부문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는 불리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형고)에서는 이러한 페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기에 반영된 자료들을 세나라시기부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적용된 형벌들에 대하여 나라별로, 년대순으로 내려가면서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형벌제도》와 력대로 봉건관료들의 탐오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적용한것으로 볼수 있는 《탐오행위에 대한 법조문》,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볼수 있는 《도적을 다스리는 제도》, 봉건정부에서 실시하였던 여러가지 금지사항으로 볼수 있는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 당시까지 편찬되였던 형벌과 관련한 법전들에 대하여 보여주는 《형벌에 관한 조문》 등 부문별로 항목들을 설정한 다음 그안에서 일정한 세부편목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들을 자료편에 편리하게 전개하였다.

그것은 다음으로 항목설정에서도 그 이전시기의 문헌들처럼 형벌에 관한 항목을 주고 내용을 서술한것이 아니라 편람의 목적에 맞게 보다 명백한 항목을 설정하고 그 항목안에서 취급할 내용들은 다시 세부편목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 내용을 전개한것이다.

《고려사》의《형법지》에서는 금지하는 제도에 대하여 크게《금하는 법령》이라는 항목

을 설정한 다음 금지하는 법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없이 그 법령을 개괄한 다음 년대순으로 내려가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전개하였다면 《경국대전》의 《형전》의 《금제》에서는 금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으나 그 시행과정에 대하여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형고)에서는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의 항목안에서도 《사치를 금지하는 제도》, 《술을 금지하는 제도》, 《여러가지 금지하는 제도》라는 세부편목들을 달고 그아래 세나라시기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기에 이르기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시행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것은 다음으로 종전의 문헌들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항목인《형벌에 관한 조문》과《륙군법률》을 더 설정한것이다.

지난 시기 문헌들인 《고려사》의 《형법지》나 《경국대전》의 《형전》들에는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리용한 형벌적용과 관련한 법조문들에 대한 자료들에 대하여 언급된것이 없을뿐아니라 또 군사분야에서의 형벌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륙군법률들에 대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서술된것이 없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형고)는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형벌관계에 대한 참고서로서의 특성을 살려 이 항목들을 더 설정하여 그와 관련한 제반 사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목 들을 세우고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증보문헌비고》(형고)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통치배들이 계급적지배와 정권유지, 반동적인 권력기구를 유지강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참고로 편찬한것만큼 이것은 고대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의 형벌제도에 대한 참고서로서는 대단히 방대하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였으며 또 그만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을 억압하는 지배계급의 무기로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철저히 리용되여왔다.

《증보문헌비고》(형고)는 우리 나라 력대 노예국가, 봉건국가들의 형벌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일련의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고대로부터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의 방대한 형벌관계자료들이 전면적으로 반영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형법제도의 발전력사와 그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는데 있다.

《증보문헌비고》의《형고》가 편찬되기 이전의 모든 법관계서적들은 해당한 개별적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기간에 제정실시된 법들에 대하여서만 기록하였지만《증보문헌비고》의《형고》에서는 고조선으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의 우리 나라 력대 국가들의 방대한 형벌적용대상과 그 적용자료들도 취급하고있다.

대표적인 법전들인《고려사》(형법지),《경제륙전》,《경국대전》,《대전속록》,《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사송류취》와 같은 문헌들은 하나같이 해당 봉건국가를 대상으로 그 봉건국가의 존속기간(해당 문헌이 편찬되던 시기까지의 기간)에 실시된 형벌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만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형고)는 고조선(범금 8조)으로부터 세나라시기, 고려시기와 조 선봉건왕조시기에 걸치는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속에 기록된 모든 형법을 적용하는 방법 과 적용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거의 반영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 력대 국가들에서 간행된 법전들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데 있다.

《증보문헌비고》(형고)에는 세나라시기로부터 고려,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 편찬된 모든 법관계책들에 대하여 편찬년대와 편찬자, 그것을 편찬하게 된 동기, 편찬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있어 우리 나라 력대 법제사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증보문헌비고》(형고)에는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거나 편찬자들의 시대적 및 계급적제 한성으로 하여 부족점도 없지 않다.

그것은 《휼형》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착취사회의 최고통치자인 국왕이 마치도 어진 정사를 실시한것처럼 내용을 전개한것과 사대주의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법관계서적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헌인 《대명률》, 《무원록》등을 위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있는 것, 인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선것을 《도적》으로 몰아 죄인취급을 한 것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형고)는 우리 선조들이 이룩하여놓은 민족고전유산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 력사와 봉건사회의 형벌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실마리어 증보, 형고